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13 선고 2020가단2233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혜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4. 29.

판 결 선 고 2021. 5. 1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36,165,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5. 28.부터 2020. 7. 2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은 48,092,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5. 28.부터 2020. 7. 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건설용 기계장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, 피고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피고 B는 2019. 2. 1., 피고 C는 2019. 7. 1. 각 퇴사하였다. 나. 원고는 2017년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였고,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위 신주를 배정받았다. 피고들은 위 신주 인수를 위한 청약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 B는 2017. 11. 5., 피고 C는 2017. 11. 6. 주식회사 D(이하 'D은행'이라 한다)과 각 대출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, 피고들은 D은행으로부터 피고들이 각 배정받기로 한 주식 청약대금(= 배정 주식 수 × 확정공모가의 95%)을 대출받고, 연 이율을 변동금리(6개월 금융채 유통수익률 + 1.151%)로 정하여 위 대출금을 1년 이내에 상환하되, 대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되고, 다만 퇴직 및 주식처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하여야 하며, 피고들이 배정받은 위 신주를 D은행에 후취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.

라. 원고는 2017. 11. 6.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.

마. 피고들은 2019. 2. 1. 및 2019. 7. 1. 원고를 퇴사한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, D은행은 2020. 5. 25. 피고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피고들의 대출원리금을 상계하였다.

바. D은행은 원고에게 2020. 5. 27.을 기준으로 위 상계 후 잔존하는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원고는 2020. 5. 27. D은행에게 피고 B의 대출원금 36,165,344원, 피고 C의 대출 원금 48,092,21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각 대출채무를 면책하게 한 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에게, 피고 B는 36,165,3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0. 5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. 7. 2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피고 C은 48,092,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5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. 7. 6.까지는 위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양지